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시 무기명투표 등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59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방식 규정	3
2.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제출 규정	6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7.

3. 회부연월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위원들이 판단요소별로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의위원회는 거수 등 공개 협의를 통한 의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피해학생 등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국회에서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적절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의

정활동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회의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고, 감사기관의 요청 등에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제3항).

□ 현행법은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회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 등)를 심의·의결한 후, 해당 조치를 가해학생에게 취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어떤 조치를 요청할 것인지 심의·의결하게 되는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보통 거수 방식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른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직·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임.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위원들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참고자료 참조)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조치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위원들은 자유 의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므로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그리고 개정안은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²⁾, 심의위원회 개의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의결 요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의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때에 개정안과 같이 무기명투표로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위원 각각의 조치가 상이하다면 과반수를 점하는 조치가 나오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둘째,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합산된 점수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을 것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운데 중한 조치만을 의결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제출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때뿐 아니라, 감사기관이 감사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도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② (생략)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u>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u> <u><신설></u> <u><신설></u>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u> ----- ----- <u>하는</u> ----- ----- ----- ---- <u>공개하거나 제출하여야</u> ----. 1. <u>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u> 2. <u>감사기관이 심의위원회의 학교 폭력 조치에 관하여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경우</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① 감사기관의 명확한 정의 필요 등

□ 개정안은 감사기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도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사항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감사기관이 따져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감사기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가 회의록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하게 정의내릴 필요성이 있음³⁾.

□ 또한 안 제21조제3항제2호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조치’라고 규정할 경우,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하는 주체인 것처럼 해석할 소지도 있으므로 현행법의 다른 조문⁴⁾과 같이 ‘조치 요청사항 등

3)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국회를 상정하고 있음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회의 결과'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② 재량규정으로 해석될 여지 해소 필요

- 현행법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임.
- 그런데 개정안은 문장의 구조가 바뀌어서 '(심의위원회가) 회의록 공개를 하는 때에는 ~ 공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은 구조로 바뀌게 됨. 이렇게 되면 마치 심의위원회의 공개는 재량규정이고 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회의록은 공개하고 어떤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음.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회의록 공개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만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처럼 보임.

이는 현행법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개정안의 개정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회의록 공개가 강행규정임이 명확해지도록 조문을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7

참고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1~3점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교육 또는 심리 치료	가해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환경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